

# 전지 생녹용도 원산지표시후 유통시켜야

## —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또는 형사입건 —

양육생산물중 녹용, 녹각, 사슴고기는 95년 1월1일부터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 됐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이 미치지 않아 그동안 등한시 해왔던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의 단속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농가에서는 녹용, 사슴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한후 유통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편 포장된 생녹용을 제외하고는 사슴고기와 생녹용 전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유통시켜 왔으나 올 해부터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농가에서 올 해 생산된 전지 생녹용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한 꼬리표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또는 형사입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산 생녹용부터 원산지표시를 강화해야 수입 생녹용의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농가에서 절편 포장한 생녹용은 지금까지와 같이 PP케이스에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고, 전지 생녹용은 농장명·대표·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입한 꼬리표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어느 농가에서 누가 생산했는지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 □ 원산지표시 방법

#### (1) 포장판매 하는 경우

(가) 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나) 글자크기

① 포장 표면적 50cm<sup>2</sup> 이상 : 12 Point(4.2mm) 이상

② 포장 표면적 50cm<sup>2</sup> 미만 : 8 Point(2.9mm) 이상

(다) 색도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표시한다.

(라) 기타

① 포장재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② 그물망 포장의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산물거래와 포장된 농산물 중 부득이 포장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과 같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 다음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표시

표시 방법	규격
스티커부착(현품)	가로 3cm×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용기표시	가로 10cm× 세로 5cm이상
푯말표시	가로 10cm× 세로 5cm이상× 높이 5cm 이상
안내표시판(판매장소)	가로 15cm× 세로 10cm이상
안내표시판(진열대)	가로 7cm× 세로 5cm이상

## □ 원산지표시 위반시의 처벌규정

### 가.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5조(벌칙)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8조, 동법 시행령 제 33조, 동법 시행규칙 제 47조(과태료)
-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림부고시 제 1999- 82호: '99.12.9)

### 나. 과태료

#### (1) 농산물

- 부과대상: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부과기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까지

#### (2) 조사거부·기피·방해 행위

- 부과대상: 원산지표시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부과기준: 500만원

### 다. 고발 또는 형사입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자
  -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위장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한 자

## □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고발포상금 지급요령(요약)

(농림부고시 제 1999- 84호: '99.12.9)

가. 지급대상: 농산물(수입쇠고기 제외) 원산지표시 위방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

나.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다. 수사기관: 검찰, 경찰

라. 지급기준

구 분	포상금지급 기준(건당)		
	부정유통물량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 또는 과태료부과 금액	민간인	공무원
법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사범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50만원 미만	50천원	- 천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	-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0	100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500	200
	1,000만원 이상	1,000	300
법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사범을 검거한 자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00	200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300	300
	1,000만원 이상	500	500
법 제15조 제2항·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00	-
	500만원 이상	200	-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고 잔여예산액으로 「공무원별 포상금 신청액 X 잔여예산액 ÷ 공무원 포상금 신청총액」의 기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인별 포상금 신청액 X 예산액 ÷ 민간인 포상금 신청총액」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신고(검거)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별도 지급

**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원사지표시 위반사항 처리건별로 검찰의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증명하는 서류나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농관원 지원장을 경유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한다.
-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포상금 지급신청시 당해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들이 합의한 포상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한다.
- 농관원장은 포상금지급대상자별로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말일까지 계좌입금 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계좌입금을 의뢰한다.

**바. 비밀보장**

- 주무관청, 수사기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신고·고발 또는 검거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부정유통 신고 전화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관별 연락처

기관명	사무실전화		기관명	사무실전화	
	일반	FAX		일반	FAX
본원	0343)446-6060	0343)443-4091	철원	0353)452-2504	0353)452-1243
시험연구소	02)2676-4085	02)2632-0881	인제,양구	0365)461-6060	0365)461-9786
경기지원	0343)449-6060	0343)445-8054	충청지원	042)226-6060	042)222-0605
서울출장소	02)2242-6060	02)2244-0223	천안,아산	0417)551-6060	0417)555-8193
인천	032)821-6060	032)819-7257	금산	0412)752-6060	0412)754-1261
수원,오산,용인,화성	0331)295-8070	0331)295-5896	공주,연기	0416)853-6060	0416)856-4487
의정부,동두천,양주	0351)874-6061	0351)874-4130	논산,부여	0461)736-6060	0461)736-9030
평택,안성	0333)657-6060	0333)657-6906	보령,서천	0452)932-6060	0452)935-0756
구리,남양주,가평	0346)565-6060	0346)557-6594	홍성,청양	0451)632-2591	0451)633-0444
성남,하남,이천,광주	0347)766-6060	0347)765-9337	예산	0458)335-6060	0458)331-2540
파주,고양	0348)944-6060	0348)943-2033	서산,태안	0455)663-6060	0455)663-5191
포천,연천	0357)534-6060	0357)535-2505	당진	0457)354-6060	0457)356-4669
여주,양평	0337)886-6060	0337)883-1320	청주,청원	0431)254-6060	0431)252-1505
강화,김포	032)933-6060	032)934-2707	충주	0441)843-6060	0441)847-2421
강원지원	0361)252-6060	0361)252-5998	옥천,영동,보은	0475)731-6060	0475)731-0255
원주,횡성	0371)744-6060	0371)743-6491	괴산	0445)832-6060	0445)832-2047
강릉,삼척,태백,동해	0391)647-6060	0391)651-9764	음성,진천	0446)873-6060	0446)873-4060
속초,양양,고성	0392)631-6060	0392)631-6313	제천, 단양	0443)646-6060	0443)646-2733
홍천	0366)435-6060	0366)435-4334	호남지원	062)232-5576	062)224-2672
영월	0373)374-6060	0373)373-7020	목포,신안,무안	0631)243-6060	0631)242-9423
평창,정선	0374)333-6060	0374)333-0628	여수	0662)651-6060	0662)651-5148

기 관 명	사 무 실 전 화		기 관 명	사 무 실 전 화	
	일 반	FAX		일 반	FAX
순천,광양	0661)742-6060	0661)742-4706	안동	0571)856-6060	0571)841-4887
나주	0613)333-2034	0613)333-2137	영천	0563)332-6060	0563)334-2041
담양,장성	0684)381-6060	0684)383-7791	경산,청도	053)816-6060	053)815-0347
곡성,구례	0688)363-2037	0688)362-0625	구미,칠곡	0546)457-6060	0546)453-3100
고흥	0666)832-6060	0666)834-3931	상주	0582)536-6060	0582)534-2170
보성,장흥	0694)852-2641	0694)853-6050	의성,군위	0576)832-6060	0576)834-4884
강진,완도	0638)434-6060	0638)434-4411	영덕,청송	0564)732-6060	0564)734-0940
해남,진도	0634)536-6060	0634)536-9639	성주,고령	0544)931-6060	0544)933-2022
영암	0693)473-6060	0693)473-5495	문경,예천	0584)655-6060	0584)655-6061
함평	0615)322-6060	0615)324-5424	영주,봉화	0573)672-6060	0573)672-1186
영광	0686)353-3737	0686)353-3739	울진,영양	0565)782-6060	0565)782-2436
전주,완주,임실	0652)243-9512	0652)246-6018	부산,울산	051)868-6060	051)864-7376
익산,군산	0653)841-6060	0653)841-3094	마산,진해,창원	0551)275-6060	0551)267-4257
진안,무주,장수	0655)432-6060	0655)433-0606	진주,사천	0591)759-6060	0591)762-6062
남원,순창	0671)635-6060	0671)626-2118	통영,거제,고성	0557)648-6060	0557)649-1215
정읍	0681)533-5111	0681)533-1662	밀양	0527)352-6060	0527)356-3909
고창	0677)563-6060	0677)561-0437	김해,양산	0525)321-6060	0525)336-3044
부안	0683)582-6060	0683)581-3448	함안,의령	0552)582-6060	0552)583-2603
김제	0658)548-6060	0658)548-8766	창녕	0559)533-6060	0559)532-7895
영남지원	053)955-6060	053)941-1938	하동,남해	0595)884-6060	0595)883-1990
포항,울릉	0562)277-6060	0562)242-7800	함양,산청	0597)962-6060	0597)964-0332
경주	0561)743-6060	0561)774-6861	합천,거창	0599)931-6060	0599)932-0818
김천	0547)437-6060	0547)433-0189	제주지원	064)721-6060	064)721-6606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실 연락처

도매시장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청과동 3층 80호)	02)403-2447
부산	부산시 북구 엄궁동 650(부산농협공관장 3동)	051)326-8245
대구	대구시 북구 매천동 527-3(관리동 4층)	053)312-6060
인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46(도매시장관리공사 2층)	032)431-2706
광주	광주시 북구 각화동 473-3(도매시장 관리사무소)	062)269-6060
대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705(대전농협공관장 2층)	042)635-3914
수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58-3(채소경매장 지하)	0331)286-6060
구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919(청과동 D동 2층)	0346)568-6060
안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관리동 2층)	0343)423-6062
안산	경기도 안산시 안산2동 528(관리동 1층)	0345)381-1437
춘천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33-1(도매시장 관리사무소)	0361)243-8460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19(도매시장 관리사무소)	0431)266-6050
충주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426-4(원예협동조합 1층)	0441)853-6368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신당동 488-1(천안청과 2층)	0417)554-0087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촌동 2가 492-35(원협)	0652)272-6060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916-4(관리동)	0653)840-3767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700(본관 3층)	0551)289-2135
울산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삼산동(청과동 3층 80호)	052)276-5869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260(본관 2층)	0591)761-3971
계	19개소	